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남궁역 의원 외 43명
- 나. 의안번호: 제116호
- 다. 발의일자: 2022. 8. 26.
- 라. 회부일자: 2022. 9. 2.

2. 제 안 사 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복원 근거가 미흡하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자연환경보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으로 변경하며,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 사항을 신설함.

3. 주 요 내 용

- 가.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5조)
-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8조)
- 마.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3조)
- 바. 자연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27조)
- 사.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제32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피재항)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환경에 대해 서울시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야생생물 보호·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사항, 용어 및 조문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는 ‘자연생태계’를 상위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으로 변경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신설된 복원 내용 및 범위를 서울시 특성에 맞게 복원대상 범위를 생태축 단절, 과도한 이용,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훼손과 함께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포장 등에 기인하는 훼손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였음.

또한, 복원 사업의 위치, 면적, 목적과 효과, 재원조달 및 유지관리 계획을 새롭게 규정하여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훼손지 복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자연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은 생태·경관 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물 다양성이 높은 녹지·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6조(자연환경의 복원) ①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지역으로서</u>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u>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u>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 <u>4.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역</u> <u>5.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u> <u>6. 그 밖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u>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u>③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복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u></p>

- 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자원조달계획
 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한 ‘보호 야생생물’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삭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물다양성’, ‘생태축’, ‘생태통로’, ‘자연자산’, ‘유전자원’ 등으로 용어의 뜻을 추가 정의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생략) 2. "보호 야생생물"이란 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3.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현행과 같음) <u>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u> <u>3. "생태축"이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u> <u>4.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淤)·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u>

	<p><u>생태적 공간을 말한다.</u></p> <p>5. <u>“자연자산”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u></p> <p>6. <u>“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u></p> <p>②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u></p>
--	---

- 안 제8조 제2항제1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 해제하는 경우에도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p> <p>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② 법 제24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p>	<p>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p> <p>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② <u>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지역을 <u>지정 또는 해제하는</u> 경우</p>

- 그밖에, 안 제6조부터 제15조, 제19조부터 제25조, 제28조~제32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연환경보전법</u>」,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보호 야생생물”이란 <u>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생물</u>을 말한다. 3.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u>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구역</u>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자연환경보전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환경정책기본법</u>」, 「<u>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및 그 밖에 <u>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u> 	<p>제1조(목적) ----- 「<u>자연환경보전법</u>」----- ----- ----- ----- ----- ----- -----.</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생물다양성”이란 <u>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u> 3. “생태축”이란 <u>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u>

〈신 설〉

4.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淤)·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5. “자연자산”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6.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용은 법 제3조 각 호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 7. (생략)

④·⑤ (생략)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
----- 실천계획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삭제〉

2. ~ 6.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천재지변 -----

-----.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2. ~ 4. (생략)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생략)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 9. (생략)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
-----.

1. ---- 지정 또는 해제하는 -----

2. ~ 4.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근거법규

3. ~ 9. (현행과 같음)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우면 사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 9. (생 략)

③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④ ~ ⑦ (생 략)

제11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천재지변 -----

3. ~ 9. (현행과 같음)

③ -----

-----.

----- 천재지변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중지명령 등) -----

-----,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원상회부)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걸맞은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 ①·② (생략)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법규
- 3. ~ 5. (생략)

<신설>

- 6. 출입방법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생략)

제12조·제13조 (생략)

제14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으로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연경관영향검토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려면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건

-----,----- 어려운 -----
----- 알맞-----
-----.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 1. (현행과 같음)
- 2. ----- 근거 법규
- 3. ~ 5. (현행과 같음)

6. 출입방법에 관한 사항

- 7. 그-----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5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

----- 인·허가등-----

-----.

축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15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보

호 야생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種)으로서 「야
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
하는 것으로 한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
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
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학술적 ·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
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
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
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
려면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증명(중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보호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 ①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삭 제〉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2.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덩, 올무, 그물, 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식물을 포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삭 제〉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9.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10.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이를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③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야생생물이 보호 야생생물로 지
정될 당시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이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1
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
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
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삭 제>

<삭 제>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
는 구역으로 한다.

1. 희귀 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
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
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
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
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
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
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
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계획)

-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안의 야생생물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2. 토석의 채취 및 오염
3.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 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1.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석의 채취

3.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허가없이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22조(출입제한) ① 시장이 야생생

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2. 시장이 인정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삭 제〉

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한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24조(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 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따른다.

제25조(철새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시장은 철새도래지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도래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2(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삭 제〉

〈삭 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신 설〉

제26조 ~ 제28조 (생 략)

제5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신 설〉

제29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자산(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산림·하천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제3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제19조(자연환경조사) ① -----

----- 자연자산-
-----위하여

----- 자연상태의 변화 파악
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

②·③ (생 략)

제30조(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 관찰)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2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정밀·보완조사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출입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기피)하지 못한다.

제31조(자연환경조사원)

① (생 략)

②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이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32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 관찰) ① ----- 제19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9조-----

----- 기피-----
-----.

제21조(자연환경조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9조 및 제20조-----
-----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급 구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한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정보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의 결과, 보호 야생생물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현황, 생태·자연도의 작성내용, 그 밖의 자연환경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자연자산의 관리

<신 설>

제34조 (생 략)

제35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

제19조 및 제20조-----

-----.

② -----

----- 1 이상-----
-----.

③ ----- 제2항-----

-----.

제23조(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 결과, -----

-----.

<삭 제>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24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25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

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기관은 이수
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의 조성, 야
생동·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
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36조(자연생태계의 복원) ① 시장
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
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생 략)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신 설〉

----- 범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자연환경의 복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
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
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
다.

1. 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
·복원이 필요한 지역
2. (현행과 같음)
3.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
4.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역
5.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
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
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
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② (생 략)

<신 설>

제37조 (생 략)

제7장 시민참여

<신 설>

제38조(시민에 의한 자연환경보호·관리)

-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되는 지역

② (현행과 같음)

- ③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제27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삭 제>

제6장 시민참여

제28조(시민에 의한 자연환경보호·관리)

- ① -----

----- 법인, 단체 -----

등을 지정하여 이를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9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0조 (생략)

제41조(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안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생태학습관 등의 운영)

① (생략)

②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생태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

범위-----.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31조(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

제32조(생태학습관 등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장 보칙

〈신 설〉

제4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및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의 관할구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한강사업본부장 및 공원녹지사업소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1. 제10조제1항·제3항·제6항, 제11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위 중지·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청소 및 유해동·식물의 제거 등 제9조·제20조 및 제25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보호계획 등에서 정하는 사항
5. 제38조 생태학습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임) -----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 관할구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

----- 공원여가센터장-----
-----.

1. -----
제12조-----

2. 제11조-----

3. 제13조-----

4.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

5. 제32조 -----

6.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제830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법 제66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